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군산시의회의를결을 얻은 군산시 의상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i>본 동서</i>		
2013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084호		
군산시 의상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상장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장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회계과 폐쇄의 정도 등에 일정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회원", "의사직", "의상장", "의상장자", "의상자유족", "의상장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상장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상장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리토를 행위를 하다가 의상장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회로금 지급에 한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특별회로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군산시 의상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제안 4조)		
○ 제4조 제2항의 1호, 2호: 의상장자 특별회로금 ○ 제4조 제2항의 3호, 4호: 의상장자 사망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치안의 비무장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소외되는 대상범위에 연평균 1억원 미만인가에 한한적인 정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소외되는 예산의 비용 1억원 미만 대상가, 비용추계 정제		
○ 지급연월: 4명 ○ 비용추계 기간: 2014. 1월 ~ 2014. 12월 ○ 군산시 의상장자 특별회로금 및 상당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추계: 22,400만원 ○ 특별회로금(수시지급): 20,000만원 ○ 수당(매월): 월 50,000원 × 4명 × 12월 = 2,400만원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은주,김종식 의원	
번치	(063) 430-5719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추진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보보조)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와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회밀 및 다른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군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형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제7조(신고의 제의) ① 시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하는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설명·구명·통박·판·주·제·입·근·부·제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행위인신고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물건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신고하기 전에 유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통정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정경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접수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를 감사·조사 종료 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의 접수·조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결정을 위한 협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사무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명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여 지지 못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정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부당한 신고자의 진정보상)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사무처 행정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복징정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조를 실시의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상자의 유족 또는 의상장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상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회로금 지급		
가. 1급, 2급: 10백만원		
나. 3급, 4급: 8백만원		
다. 5급, 6급: 5백만원		
라. 7급~9급: 2백만원		
3.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4. 그 밖에 의상장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의상장 또는 의상자의 유족에게 별표1의 지급분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배할 수단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정비한 신제상자의 부상을 입은 의상장은 제외한다.		
④ 상당의 지급분별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의상장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단, 수밀자가 배후자인 경우에는 제가시 지급이 중단되며, 자녀인 경우에는 만20세까지로 지급을 제한한다.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상장자가 모여온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 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군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시장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상장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군산시 의상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선사무의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	-----

발의연월일: 2013년 6월 일

발의의원: 유은주, 김종식의의원(2인)

한결의원: 임종우,김영남,유은주,김종식,유은주,김종식 의원(7인)

1. 제안이유

○ 의상장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사에서 그 회계과 폐쇄의 정도 등에 일정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상장자 지원대상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의상자의 유족 또는 의상장 및 그 가족에 대한 특별회로금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4조)

라. 의상장자에 대한 예우 등 필요조치를 정함(안 제5조)

마. 의상장과 그 가족 또는 의상자의 유족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이복희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2013년 6월 일	
발의의원: 이복희의원(1인)	
한결의원: 유은주,임종우,김영남,유은주,김종식 의원(7인)	
김종숙의원:정시영의원(7인)	

의안 번호	제 호
----------	-----

1. 제안이유

○ 군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활동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①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로부터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정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보조) ① 직무상 또는 우연의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감동수 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묻지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물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된 신고자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은 불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신분공개제 적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정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조사·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정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명절차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친족, 자제, 제증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비밀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하위임을 알았든지 하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정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제6조(지원신청) 의상장과 그 가족 또는 의상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상장자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상장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제2항의 특별회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라 인정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수당은 조례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의상장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의상장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6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답 의: 주민복지과 주민행장관리과, 기획예산과 법무계 회의		
4. 붙 입		
○ 제정 조례안 1부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i>본 동서</i>		
2013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086호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청정한 공직 및 사회공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군산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한다.		
1.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앞선·장타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조리행위나 그 음해를 가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④ 시장은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기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은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협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보상금 지급여부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정제결과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위험 또는 가망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읍·면사무처 공무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예의 대상으로 인지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별표 1]		
수당 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		
구 분	월 지급액	
의상자의 유족	50,000원	
1급 ~ 2급 의상장	50,000원	
3급 ~ 6급 의상장	30,000원	

제42호

사 보

2013. 7. 15(월)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085호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란 군산시지회와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회원"이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별표 제11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일명			
신청 연		제1선 청 연	
분쟁조정 신청내용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출 석 내 용	(참고인,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전에 대하여 취하의 의견을 청취하고 출석요구 하였으나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아니하여,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할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33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월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i>본 동서</i>		
2013년 7월 15일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농업, 공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별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중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37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3. 별이 정하는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중수 이행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실명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명·임명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의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1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별표 1]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표(제6조 제4항 관련)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			
용 도	사용량	요금	비 고
일 반 용	1m ³ 당	군산시 일출별 상수도 요금의 90%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별표 제12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거부증지)통보서		
조정일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제1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증지 사 유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전에 대하여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인의 분쟁조정을 거부추진함을 통보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요·공급 현황 및 물 이용 현황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천 하천의 하천 유지 용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8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③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계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이복)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사업 발급)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면사업료를 별도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2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13. 5. 제 출 자 수도시설수장 제안심일자 하 수 과 장
1. 제정 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저 지단계 조대로 정화도록 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제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제 제정 목적		
○ 용어의 정의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물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 하류 하천의 유지 용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46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1항 의원 대표발의)		
발의년월일	2013년 6월 03일 의원명 김동진, 김희정, 김현진, 김현우, 박 의 원 : 김성호, 최동진, 정영호, 이학, 서승환, 김두연	
의안번호	제 호	
1. 제정 이유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나열하고, 위원회의 분쟁조정이 부결되거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 임대주택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 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원심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분쟁조정 산정대상 상회범에서 적시한 내용을 세밀하게 나열하여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함(제1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분쟁조정이 부결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제17조)		
○ 의결시 거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단시조항을 삭제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제18조)		
- 35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산시청(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설치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영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② 시장은 법,령 또는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영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부터 제25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39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23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공중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의 제목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준(제23조제3항 관련)"을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		
- 43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안 제4조)		
○ 설치 권장 시설물: 자봉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라. 중수도 및 설치기준 (안 제5조)		
○ 설치 의무 시설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연면적 6만㎡ 이상인 시설물 중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발전시설 등		
○ 설치 권장 시설물: 의무시설물 외의 연면적 6만㎡ 이상인 시설물		
마.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안 제6조)		
○ 시장은 하수처리 용량이 5천㎥/일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		
○ 재처리수의 용량: 군산시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인 경우 군산시 일출별 상수도 요금의 90%(공공용은 면제)		
바. 재정지원 등 (안 제7조)		
○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안 제8조)		
○ 수도요금 감면: 군산시 상수도 관련 조례에 따른		
○ 하수도사용료 감면: 군산시 하수도 관련 조례에 따른		
아.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8조 - 제14조)		
- 47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감청·전단·심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되는 비용 부담 관련하여 분쟁당사자가 부담 근거 마련(제18조의2)		
○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분쟁조정 신청 등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신설(제21조-제25조)		
- 36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군산시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인 경우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판매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40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 제2항 관련)"으로 한다.		
제4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권력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44 -		

제420호

사 보

2013. 7. 15(월)

-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장 소속하에 군산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자. 교육·홍보 및 시행규칙 제정 등 (안 제15조 - 제16조)

-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차. 부칙

-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
-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기존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등

3. 참고내용

가. 관련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자체예산

다. 규제신사 : 해당없음

라. 입법 예고기간 : 2013. 5. 1 ~ 5. 21 / 의견 접수사항 없음

제63호

사

2015. 7. 15(수)

번호	명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비고
56	충청17동 도로개발공사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57	충청남부 도로개발공사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장제서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58	당항사거리 도로개발 공사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문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59	월경정원로 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지정물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60	월경남양마을 도로개발공사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지정물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61	중앙동 중앙중주변 도로개발공사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지정물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62	계방광안-매곡리 도로개발공사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지정물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63	문동동 군안광동 도로개발공사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지정물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64	옥구구도읍 옥성사입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지정물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65	영동상가 주변 환관로 사업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장제서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66	군진시 광천로제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판권지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67	신석리천 영동 병곡개발사업	도시계획과	지정관리 조현광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68	조전천로구 구동 일대 개발사업	건설 과	지정관리 지정물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69	월포-월포로 도로확장 공사	건설 과	지정관리 배준호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지정관리 처

402호		시 보		2013. 7. 15(금)	
유형 번호	명 세	도면사	입원사	비고	
70	여조전 (근58호) 도로 확보 공사	권 진 화	시정사업 시정사업		
71	독 노여조전로 도로 확보공사	권 진 화	시정사업 배출소	시정사업	
72	성원전-대흥동농로 도로 확보공사	권 진 화	시정사업 이천원	시정사업	
73	갈매정역전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권 진 화	시정사업 향촌소	시정사업	
74	만석면전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권 진 화	시정사업 향촌소	시정사업	
75	물마루 원천마을 조성사업	권 진 화	시정사업 향촌소	시정사업	
76	주요도로변에 다목적 가로등 설치	권 진 화	공립사업 공립사업		
77	관천(시정사업)마을 주민자치회소재 주민요양시설(노년회)및 주민요양 시설	권 진 화	공립사업 공립채	차량정원	
78	미용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립사업과	시정사업과 양호소	시정사업	
79	수출물 구인전면 신축사업	공립사업과	시정사업과 공립채	시정사업	
80	주요본 건축공사	공립사업과	시정사업과 시정채	시정사업	
81	배출물 관측대 부수개발	공립사업과	시정사업과 이명관	시정사업	
82	관천(시정사업)마을 주민자치회소재 주민요양시설	공립사업과	시정사업과 공립채	차량정원	
83	호수정기 구인전면 개관사업	권 진 화	시정사업 소호채	시정사업	
84	고지대 물참가정수 관측사업	권 진 화	시정사업과 관정소	시정사업	

시 보				2013. 7. 15(목)
유형 번호	정 명	소관부서	담당자	비고
65	군산시 건축료 및 설계 수수료료	건축 과	서정균 차정민	차지합
66	군산시 공공건축물 건축공사료 및 유형별 관리료	공공행정 과	정재희 장정민	차지합
67	군산시 구역상 조세 및 설계 수수료료	공공행정 과	정재희 장정민	차지합
68	장흥면 소하천 정비사업	재산관리과	서정균 유승우	시정산
69	외포우천 소하천 정비사업	재산관리과	서정균 전인숙	시정산
70	해미읍내 제천정원지구 정비	재산관리과	서정균 관동희	시정산
71	개성읍 제천정원지구 정비	재산관리과	서정균 소수민	시정산
72	신양읍 제천정원지구 정비	재산관리과	서정균 소수민	시정산
73	동농동읍 제천정원지구 정비	재산관리과	서정균 소수민	시정산
74	지리초등학교(25)건축공사	보조사업과	서정균 장정민	시정산
75	보진초 야생 연꽃사업	보전사업과	보정균 문은혜	시정산
76	동여천역세권상수도 확충사업	수도 과	서정균 오민정	시정산
77	여름철 저수지 초소 운영	수도 과	서정균 차정민	시정산
78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 및 배수부 수수료료	수도 과	가동하 박정우	차지합
79	군산시 생활하수처리 시설 조세	수도 과	서정균 최은선	차지합

제60호		시 보		2015. 7. 15(목)	
공화 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100	군현하위조직 고도화사업	하 수 조	사정관 단장	사정관 단장	사정관 단장
101	신원취직률 조사사업	하 수 조	사정관 단장	사정관 단장	사정관 단장
102	군민서 하수조 시설 하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 수 조	행정관 단장	행정관 단장	자치행정 과장
103	제60호 보건의료관리법 시행령 부분공문	제60호	보건관리 과장	보건관리 과장	보건관리 과장
104	청소차량 관리조례	문화체육 과장	문화체육 과장	문화체육 과장	문화체육 과장
105	군민서 하수조 조례	제60호	행정관 단장	행정관 단장	자치행정 과장
106	군민서 하수조 조례	제60호	행정관 단장	행정관 단장	자치행정 과장
107	군민서 하수조 조례	제60호	행정관 단장	행정관 단장	자치행정 과장
108	군민서 하수조 조례	제60호	행정관 단장	행정관 단장	자치행정 과장
109	군민서 하수조 조례	제60호	행정관 단장	행정관 단장	자치행정 과장
110	군민서 하수조 조례	제60호	행정관 단장	행정관 단장	자치행정 과장
111	군민서 하수조 조례	제60호	행정관 단장	행정관 단장	자치행정 과장

번호	명	성	소속부서	임원직	비고
115	주은혜	PC 조사담당	정보보안팀 담당관	원안 7급 박원직	직설보상
116	권정현	선속	총 통	행경 7급 과직원	
117	권순식	행정지원도, 서울 조출발방 연구유직	기획재정	행정 7급 임원직	연구보직
118	이현태	2020 학년도 조사	인적행정	행정 7급 임원직	사복
119	박진성	주관 관리직	지역경제	행정 7급 임원직	직설보상
120	그간인정기재발행금지원사직		지역경제	행정 7급 순수급	직설보상
121	공정개발원 종합지원소장직	국회	지역경제	행정 7급 순수급	직설보상
122	권순식	근로자 장학금 지원과	지역경제	행정 7급 순수급	과직원
123	권순식	농업 지원과	지역경제	농업 7급 임원직	과직원
124	이연희(농통, 투무)	선속	행정수준	지역 7급 임원직	직설보상
125	캐비도-이연희	순수 급	행정수준	지역 7급 임원직	직설보상
126	이연희(농통, 투무)	선속	행정수준	행정 7급 순수급	직설보상
127	이연희(농통, 투무)	선속	행정수준	지역 7급 임원직	직설보상
128	황철호	대표이사	안전관리	지역 7급 순수급	직설보상
12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지역 7급	지역 7급 순수급	직설보상

등록번호	제 목 명	소관부서	업인종	비고
1305	물매인 목지시설 인과와 물매	목지지원과	행정지원 안전과	시설관리
131	경지시설 이용권 관리 재산사업	목지지원과	목지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32	군부동산부지 투자금 조성	문화체육과	시설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33	근대산업단지 활용 예술창작사업	문화체육과	시설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34	세관군 유엔 사업사업 조성	관광진흥과	시설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35	4대강 제방 생활친화적 시설 구축	환경안전과	지정관리 강령과	현장지원
136	레저지원단 관공지조성 설치사업	자연환경과	행정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37	구(소)산악도로 정장단 도제설	도제지원과	시설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38	군정대학교 건설	도제지원과	시설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39	군정대학교 원전도로 개설	도제지원과	시설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40	군산지 지역전산시설 활용시설 관공지 관공지	행정기금 강령과	행정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41	지정관 제비로구 축산시설	전 령 과	시설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42	군내에 교외로 개관사업	전 령 과	시설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43	군산 군정 대학교 화장사업	문화체육과	시설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144	예비지도 사자원지 지리정보 개발사업	행정지원과	시설기금 강령과	시설관리

제40호	시 보		2013. 7. 15(수)
등록 번호	명 세	소관부서	업종 과목
143	한화호텔·병원·인원수관리·호텔	공공시설팀	시설 관리 시설공사
146	현대자동차(사)인기(HEC) 구축 사업	공공행정과	현장 관리 시설공사
147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행정과	행정 지원 시설공사
148	스마트인 어린이 교통안전 간소 시책	공공행정과	시설 관리 시설
149	마케팅 센터내부 조성	제안관리과	시설 설 구현
150	경로전 생애주기별(수확물)사업	제안관리과	시설 설 구현
151	보건복지·친환경 건축	보건지원과	보건 설 구현
152	교과교육과 수능도입을 위한	수 도 과	시설 설 구현
153	문화관광수련원, 하우스도, 정자마을	하 수 과	시설 설 구현
154	경로정착촌 하우스정착마을	하 수 과	시설 설 구현
155	하우스단지 리모델링 설치사업	하 수 과	시설 설 구현
156	공공하우스단지 오프로젝트계간사업	하 수 과	시설 설 구현
157	농어촌 마을하우스도 정비	하 수 과	시설 설 구현
158	역전역후원센터운영장비포장	체육시설 관리과	시설 설 구현
159	농업인 생활지원비 및 농업자랑마을 지원	농 경 과	행정 지원 사무

등록 번호	명	세	성	소관부서	업인사	비고
360	광역친환경농산물전시회 조성	농	농	과	행정국 감사팀	시설공사
361	제3차 도청 종합 계획 사업	행정안전과	시설국	국 감사업	시설공사	
362	제4차 도청종합 개발	행정안전과	시설국	국 감사업	시설공사	
363	여청도 도청개발 유휴화사업	행정안전과	시설국	국 감사업	시설공사	
364	신원도 관광자원 시설 조성	행정안전과	시설국	국 유관과	시설공사	
365	남도 관광발전용 조성	행정안전과	시설국	국 유관과	시설공사	
366	서림 경제자유도 양묘원 조성	산림농수산	국 과	관청	시설공사	
367	교묘사의 태백 노인시설 확충	복지지원과	국 지	국 은청	시설공사	
368	신대 예도민정동 조성	문화체육과	시설국	국 해관	시설공사	
369	조각공원 조성	문화체육과	전원다 국	국 청	시설공사	
370	진포해방 태극광원 조성공사	관광진흥과	시설국	국 사	시설공사	
371	강양호관광지 확대개발 및 시설개선 반영 유역	관광진흥과	시설국	국 관청	연구용역	
372	은파관광지 조경문화조 조성공사	관광진흥과	시설국	국 사	시설공사	
373	세양관 조경문화체육조 조성	관광진흥과	관광국	국 사	시설공사	
374	밀레 신안역 관광문화체육 시설 추진	관광진흥과	관광국	국 사	시설공사	

등록 번호	명 세 명	소관부서	임원자	비고
175	세한길 탁구팀 조성	관장실문화	황영남 이재현	시설공사
176	골산 시외문화회 편성	도시계획과	이철구 최창훈	연구학적
177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도시계획과	이철구 김기현	시설공사
178	봉곡다목적 가운재활 및 가이더인 휴먼	도시계획과	김민태 박상진	연구학적
179	계정·측산단 도로복합용 공사	전 설 과	이철구 배준호	시설공사
180	타운로 개설	공영사업과	이철구 조기영	시설공사
181	미성·태대간 도로개성	공영사업과	이철구 최광문	시설공사
182	공용운동장계 인원과 도면도시 사업	공공행정과	박영태 박준호	시설공사
183	신동읍 체육회현역구 정비사업	재난관리과	이철구 조은재	시설공사
184	철령읍 체육회현역구 정비사업	재난관리과	이철구 조은재	시설공사
185	늘어난 지평상수도 확장	하 수 과	이철구 최현진	시설공사
186	대왕암군 임시유치 해수욕장보 설치사업	하 수 과	이철구 이정민	시설공사
187	경장 갈매곶구 해수관망지정사업	하 수 과	이철구 이정민	시설공사
188	세한문화회 유수관기 정비사업	하 수 과	이철구 이승재	시설공사
189	관산문화회도립수정수 및 관내하 관운로	하 수 과	황정구 최영남	시설공사

일차 번호	명	세	명	소관부서	담당자	비고
120	대한금속공회교육위원회	송현원(차장)	하 수 자	물류경영 관리팀	서정훈	
121	구분설치-중소사자도 도교제	도시계획과	차정기	차정기	서정훈	
122	차부도시관리 조성	시설관리과 관리과	이석기 최은진	이석기 최은진	서정훈	
123	원도상 환경과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과	서정훈	서정훈	연구용역	
124	통수유역지 종합계획 수립	제안관리과	서정훈	서정훈	연구용역	
125	군산시 읍면사무 회기후 수문 수량 관리 및 제 할용 축진을 위한 조제	지형측량과	행창준 조준준	행창준 조준준	사적연구	
126	고양군도 열도도 조사	전 설 과	서정기	서정기	서정훈	
127	발전계획 수준을 종합평가 사업	전 설 과	서정기	서정기	서정훈	
128	배양유역조사구제정	전 설 과	전국록	전국록	서정훈	
129	세간지 제안의 사업과 사업	관할관리과	행창준 이유진	행창준 이유진	서정훈	
130	전북회-유일하도도 도제제	도시계획과	서정기	서정기	서정훈	
131	수문조사 수문 전설로 개설조사	도시계획과	서정기	서정기	서정훈	
132	문화유산 관리 조성사업	문화체육과	행정 등준준	행정 등준준	서정훈	
133	서간군 축장군	문화체육과	서정기	서정기	서정훈	
134	형상상 생태 복제 태복조 조성	산림녹화과	현정남 최경배	현정남 최경배	서정훈	

연차 번호	명 세 령	소관부서	담당자	비고
200	구합 3.1 운동 선행학 사업	생활복지과	박 지 관리과	시정문서
206	농촌진흥 총포양자 조성사업	농수산물 유통과	박정남 국립농 수산진흥 중앙 농수산 유통과	시정문서
207	나운배에서 배수구로 초당사업	주 도 과	사 실 7 구 총합과	시정문서
208	나운 열정지구 우우저수지 설치	채난관리과	오창환 시정문 서	시정문서
209	유한정 관리하수 정수처리 전설 및 기술 개발	지역개발과	황 정 7 구 인합과	시정문서
210	원적 동굴전사 조성사업	투기개발과	사 실 7 구 자문과	시정문서
211	비연도 정자과로 실용성 개구기 사업	해당문서과	사 실 7 구 인합과	시정문서
212	신시도 여인배배를 조성 사업	해당문서과	황 정 7 구 인합과	시정문서
213	양죽도 이종호 자연공원을 조성사업	해당문서과	사 실 7 구 인합과	시정문서
214	해운동 도서관 여도열전 공사	사실도자관 리과	사 실 7 구 회전과	시정문서
215	청원보통관리시스템 (306) 3대 및 10대 연계관리 구축	보통행정과	전산 7 구 인합과	시정문서
216	군산시 시제 기본조례	제 4 부	제 4 부 7 구 회합과	제정명
217	군산시 시제조례(일반계)	제 4 부	제 4 부 7 구 회합과	제정명
218	군산시 시제 일반 조례	제 4 부	제 4 부 7 구 회합과	제정명
219	군산시 시제 기본조례 부속 부속 규칙	제 4 부	제 4 부 7 구 회합과	제정명

등록 번호	명 세 명	소관부서	업종	비고
220	군산시 시계 제작업자(전주부성)	제 4 부	제 4 부 공 회계업	지역협력
221	군산시 자동차용 제투포니 운영업	제 4 부	제 4 부 공 회계업	지역협력
222	도도라 지사지점 200과 전라북도 농작업사업	도청직할	시 설 공 회계업	연구협력
223	산학협력연구소 사업	지역협력	행정공 회계업	시설공역
224	무등도 놀이장과 같은 놀이사업	태양산사업	사업공 회계업	시설공역
225	관동도 관광관리지 조성사업	태양산사업	사업공 회계업	시설공역
226	연도 제한일주 경관도 조성사업	태양산사업	사업공 회계업	시설공역
227	개사도 관광코스인원 정비사업	태양산사업	사업공 회계업	시설공역
228	군산시도지역제투포니개발사업	도청직할	사업공 회계업	지역협력
229	군산시농업진흥부지조성사업(전주부성)도청 앞모퉁이로 도청직할지 관한 조세 발행사업	지역협력	행정공 회계업	지역협력
230	군산시시계제작업	군청직할	회계공 회계업	지역협력
231	군산시농작업지개발사업 조세발행사업	부 농 과	군청직 회계업	지역협력
232	군산시시계제작업(전주부성) 제투포니사업	도청직할	행정공 회계업	지역협력
233	군산시농작업지개발사업(전주부성)도청 앞모퉁이로	제 4 부 회계업	회계공 회계업	지역협력
234	스마트마을지구 구축사업	신도시 담당관	신도시 담당관	시책

등록 번호	명 세 명	소관부서	담당자	비고
235	해당2지구 재해민원지구 정비사업	재난관리과	서정남 조순영	자치영문사
236	소문지구 재해민원지구 정비사업	재난관리과	서정남 조순영	자치영문사
237	제2과 안전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방안연구과	서정남 관훈희	연구용역
238	군 안전 자치율인양제를 지원 조례	여성가족 특성사업	행정담당 인양남	자치영문
239	군에서 제출되었던 관리 관리 조례	예술의전당관리 과	행정담당 양명남	자치영문
240	군 안전 사회복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행복지원과	행정담당 유은문	자치영문